

2025년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GMEP)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시장조사, 비즈니스 현지화 등을 지원하는 '2025년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Global Market Expansion Program)'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GMEP) 프로그램」 '협약체결 협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진출 가능성 검증 및 경쟁력 함양 유도
- 지원대상**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지원내용** :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해외시장 진출자금 평균 3천만원
- 협약기간** : '25. 6. 1. ~ 11. 30. (예정)
- 선정규모** : 140개사 내외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진출자금 30백만원

- ① 프로그램 :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산업분야별 창업기업 경영·기술 진단, 비즈니스모델 현지화 및 네트워킹 등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지원
- ② 해외시장 진출자금 : 액셀러레이팅 참여 목적의 국내외 여비, 해외법인 설립 및 지재권 취득 등 해외시장 진출 비용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p>• 참여기업별 글로벌 진출 KPI 수립, 국내 및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p> <p style="text-align: center;"><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구성 (예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4a460;">국내 프로그램</th> <th style="background-color: #f4a460;">해외 프로그램</th> <th style="background-color: #f4a460;">자율 프로그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I 수립 · 산업기술 교육 · IR 피치덱 제작 등 </td> <td style="text-align: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파트너사 미팅 · 투자유치 IR · 현지 PoC 지원 </td> <td style="text-align: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 로드쇼 · 성과교류회 · 알룸나이 등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주</td> <td style="text-align: center;">6주</td> <td style="text-align: center;">2주</td> </tr> </tbody> </table>	국내 프로그램	해외 프로그램	자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I 수립 · 산업기술 교육 · IR 피치덱 제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파트너사 미팅 · 투자유치 IR · 현지 PoC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 로드쇼 · 성과교류회 · 알룸나이 등 	4주	6주	2주
	국내 프로그램	해외 프로그램	자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I 수립 · 산업기술 교육 · IR 피치덱 제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파트너사 미팅 · 투자유치 IR · 현지 PoC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 로드쇼 · 성과교류회 · 알룸나이 등 								
4주	6주	2주								
	<p>* 전체 프로그램은 10주 이상으로 해외 프로그램은 최소 4주 이상 구성됨</p> <p>** 상기 프로그램(안)은 예시이며 참여기업 선정 후 주관기관별 구체화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I 수립) 현지 법인 설립, 해외 투자유치, 해외 파트너십 체결 및 해외 지재권 취득 등 참여기업별 글로벌 시장 진출 목표 수립 - (국내 프로그램) 타겟시장 BM 적합성 검토, BM 피봇팅, IR 교육 등 해외 프로그램 전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 (해외 프로그램) 현지 비즈니스 미팅, 투자유치 IR, PoC 등 현지 액셀러레이터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 (자율 프로그램) 성과 교류회, 선배 기업과의 간담회, 알룸나이 데이 등 주관기관 자율 프로그램 지원 									
글로벌 진출 자금	<p>• 지재권 취득비, 국내·외 출장을 위한 여비, 전시회 참가비 등 글로벌 진출 지원금 평균 30백만원 차등 지원</p> <p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총 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p>									

< 총 사업비 구성(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4,286만원 (100%)	3,000만원 (70%)	429만원 (10%)	857만원 (20%)

-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 현금(10% 이상) + 현물(2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는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비목 >

비목	비목정의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지급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에 소요되는 비용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국내외 전시회 또는 박람회 참가등록비 및 부스 임차비용 • (시험·인증비)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 • (서버 이용료)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클라우드 서버, GPU 서버 등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 (통번역비) 창업아이템과 관련하여 외국어로의 통번역이 •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창업아이템의 해외 반출, 수출시 발생하는 운반비, 보험료 및 보관료의 실 소요비용 • (비자발급 및 여행자보험) 국외 출장 목적 비자발급 및 여행자 보험 • (해외법인설립비) 해외 법인 설립시 필요한 소요비용 • (회계감사비)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이 (의무계상)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교통 및 숙박비만 지원 가능하며 식비 및 일비는 불가)
광고선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제품(서비스)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신산업창업 분야 >

①	인공지능	⑩	자율주행차	⑲	스마트홈
②	빅데이터	⑪	전기수소차	⑳	신재생에너지
③	5G+	⑫	바이오	㉑	이차전지
④	블록체인	⑬	의료기기	㉒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⑤	서비스플랫폼	⑭	기능성 식품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⑥	실감형콘텐츠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㉔	우주
⑦	지능형 로봇	⑯	미래형 선박	㉕	차세대 원전
⑧	스마트 제조	⑰	재난/안전	㉖	양자
⑨	시스템반도체	⑱	스마트시티	㉗	사이버 보안

*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신산업 창업 분야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업력 7년 이내) **2018년 4월 15일 이후 창업한 기업**
- (업력 10년 이내) **2015년 4월 15일 이후 창업한 기업 (신사업창업분야 해당시)**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항 및 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를 결정([참고1] 「창업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 여부 확인)

□ 신청분야

- ①~⑨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 (*** 중복신청 불가**)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국가, 산업분야 및 선정규모 >

신청구분	지원국가	산업분야	선정규모	해외액셀러레이터	주관기관
①	싱가포르 (싱가포르)	푸드테크, 에그테크 그린바이오	20개사	INNOVATE 360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②	독일(베를린), 핀란드(헬싱키)	국토교통	20개사	BETAHAUS, VERTICAL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③	미국 (서니베일, 샌프란시스코)	서비스 플랫폼,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20개사	Team of Wakers	한국청년 기업가정신재단
④	독일 (뮌헨, 베를린,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기후테크	20개사	Startup Colors	충남창조 경제혁신센터
⑤	미국 (서니베일, 마운틴뷰)	딥테크 (IP-Based)	20개사	plug and play Silicon Valley	한국특허정보원
⑥	미국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에듀테크	15개사	Mind The Bridge	한국에듀테크 산업협회
⑦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기후테크	7개사	AfricArise	한·아프리카재단
⑧	이집트 (카이로)	에이징테크	8개사	plug and play Cairo	
⑨	프랑스 (파리)	우주	10개사	Starburst France	한국우주기술 진흥협회

* 신청구분 ②의 경우, 독일 및 핀란드 모두 참여 가능해야 함

** 주관기관 및 해외 액셀러레이터 세부내용은 [별첨1] 주관기관 및 해외AC 소개자료 참조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②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참고3]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글로벌창업 지원사업' [참고4]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6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글로벌 진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 참여 사업 회계연도가 다를 경우, 타 수행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의 정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2025년 동 사업 수행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본 사업 참여 인력 중 최소 1인 이상은 대표자 또는 C-level의 의사 결정권자를 포함하여 해외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본 프로그램은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으로 원활한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함
- 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해외 체류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선정기업과 참가자에게 귀속됨
 - * 현지 법규 준수,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한 연락 체계 유지, 현지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개인의 위생관리,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한 주의 등 프로그램 외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 등
- 선정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및 액셀러레이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음
-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5.4.14.(월) ~ 5.8.(목) 15:00까지

< 유의 사항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 신청·접수는 **15: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다만, 15: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7: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7:00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별첨2]' 참고

< 유의 사항 >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신청분야(공고문 5페이지 참고) 중 한 개만 신청**
 -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신청분야와 시스템 접수 신청분야 동일 여부 필수 확인**
 - ※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신청분야와 시스템 접수상 신청분야가 상이할 경우, K-Startup 홈페이지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진행**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붙임1 참고)
 -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붙임2 참고)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붙임 1] 양식에 작성 [붙임 2] 증빙서류 양식에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사본		
④ 사업자 증빙 · (개인) 사업자등록증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청렴실천 선언문		
⑥ 창업유지동의서		
⑦ 창업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증빙서류		
① 영문 인터뷰 발표자료	서류평가 통과기업에 한하여 추후 제출	-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평가는 ①요건검토→②서류평가→③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로 진행하며,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서류평가, 발표평가 점수는 개별 산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①요건검토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	④최종선정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류 평가	발표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최종선정자 및 지원금액 심의
주관기관	엑셀러레이터 등	엑셀러레이터 등	창업진흥원

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 서류평가 대상자가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후 발표평가 진행 가능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③ **발표평가** : 해외 엑셀러레이터가 포함된 평가위원회가 온라인 영어 인터뷰를 진행하여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선정
 - 인터뷰는 창업기업 대표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아이템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 확인

- * 인터뷰 시간은 기업당 30분 내외이며 영어로 진행
- **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하에 사업계획서상 참여 인력(4대보험 가입 직원)에 한하여 대체 가능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분야별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서류평가) 비즈니스 모델 수준, 제품 시장 적합성(PMF), 글로벌 진출 및 성장 가능성, 팀빌딩, 참여 의지로 평가지표 구성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사업 적합성	- 사업 참여 목적의 부합성 - 프로그램 참여 의지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적정성	20점
비즈니스 모델	- 사업 아이템 차별성 및 우수성 - 기술의 차별성 및 보유 특허 등 - 고객 분석의 명확성 및 적합성	30점
글로벌 진출 역량 및 성장 가능성	- 글로벌 시장 적합성(PMF) 및 차별화 - 해외시장 진출 준비 정도 - 수익 모델의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 프로그램 참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40점
팀구성 가점	- 대표자, 참여인력의 경험 등 우수성 - 최대 1점	10점 -

- 아래 사업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한 기업에 대하여 서류평가에서 가점 부여

구분	참여 사업명	비고
1	도전! K-스타트업 2024 왕중왕전 수상팀	가점 1점 부여
2	'24년 글로벌 기업 협업 최종평가 "최우수" 창업기업	
3	'25년 CES K-스타트업 통합관 멘토링 지원기업	

- * 2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가점 최대 1점 적용(중복 가점 불가)
- ** 가점 해당 사업 참여여부는 창업진흥원에서 확인하여 주관기관에 공유 예정으로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발표평가) 주관기관별 액셀러레이터의 자체 평가지표에 따름

*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발표평가 전 별도 안내 예정

□ 사업 운영일정(안)

공 고	창업기업 신청·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홈페이지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창업진흥원
'25.4.14.(월)	'25.4.14.(월) ~ 5.8.(목)	~'25.5월 중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창업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 창업기업(개인, 법인)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K-Startup 누리집
~'25.6월 중		~'25.6월초
사업수행	중간점검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25.11월	'25.8월	'25.12월 중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신청 시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기업민원 피해신고

-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써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시,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5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 과정에서 신청하는 창업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 단, 부득이한 경우 전문기관 승인하에 4대보험가입 직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인터뷰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중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유효기간 내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혹은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 * 업력 및 창업기업 확인 기준 관련 서류(총사업자등록내역, 내역 상 '계속' 중인 모든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창업여부 확인서(창업기업용), 주주명부 등)

□ 선정 후 유의사항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이메일 및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 예정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본 공고에서 명시한 동시수행 불가사업(참고4 참조)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본 공고에서 명시한 동시수행 불가사업(참고4 참조)에 이미 '협약 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 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 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 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7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문의) 신청 희망 기관별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 주관기관 문의처 >

권역	산업분야	주관기관명	전화번호 / 이메일
남아공, 이집트	기후테크, 에이징테크	한·아프리카재단	☎ 02-722-5115
			E) ecd@k-af.or.kr
독일	기후테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41-536-7828
			E) global_ac@ccei.kr
독일 핀란드	국토교통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031-389-6537
			E) sh.park@kaia.re.kr
미국	에듀테크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 02-6959-2953
	서비스플랫폼,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E) geou3@ketia.kr
			☎ 02-2156-2381
E) global@koef.or.kr			
싱가포르	푸드테크, 에그테크, 그린바이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02-6915-1417
			E) sungjookim@kipi.or.kr
프랑스	우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 063-919-1375
			E) minsu2711@koat.or.kr
프랑스	우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 02-6494-0020
			E) jaehyunlee@kasp.or.kr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 2**지원 제외 대상 업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연번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

연번	업태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3	가상화폐 거래소업
4	가상화폐 개발업
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6	가상자산 취급업
7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8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단,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

참고 3**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진출 지원 제외사업 목록**

-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2011~2015년)
-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사업(2016년)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2017~2024년)

참고 4**동시수행 불가 사업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기관)
글로벌		
1	· 글로벌스타트업육성(AI 특화 액셀러레이팅)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	· K-스타트업센터(KSC)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3	·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4	·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